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3년 10월 14일 마동환 의원 외 7명
- 나. 회부일자 : 2013년 10월 15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81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13년 10월 25일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마동환 의원

### 가. 제안이유

공영주차장내 생활체육관 등을 이용(강습)하는 프로그램 수강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료 면제 시간을 확대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공공시설 이용(강습) 차량의 면제시간을 현행 90분에서 2시간 이내로 조정함  
(안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)

## 3. 검토보고

본 개정 조례안은 영리생활체육관 등 공영주차장내 부대시설로 설치된 다중이용 공공시설 이용자가 프로그램 수강 등을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시 제공되는 무료 주차시간을 현행 90분에서 2시간(120분) 이내로 확대하여 주민의 부담 경감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,

무료주차 시간 확대 시 주차수요 유발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차장 혼잡 우려와 주차료 수입의 감소 등이 예상되나, 현재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무료 주차 시간이 부족하여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, 주민 불편 해소와 편의를 위해 무료 주차시간 연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.

다만, 무료주차 시간이 확대될 경우 공영주차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수입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무료주차 시간을 시설별 또는 프로그램별로 2시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,

기타 조례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, 예산 관련하여 집행부는 주차수입의 감소가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출하였으나, 조례 개정에 따른 중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토론요지 : 없음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**

**8. 기타사항 : 없음**